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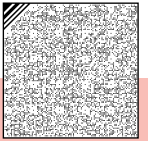


웹 접근성 준수,
차별없는 웹 세상의 시작!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여러분과 그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http://www.kwacc.or.kr>





Contents

02_ 1.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조직도

주요연혁

04_ 2. 웹접근성 평가사업

웹접근성 평가사업

주요실적

WA인증마크 심사절차

WA인증마크 주요 발급 사이트

08_ 3. 웹 접근성

웹접근성의 준수 필요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적절한 웹접근성 & 부적절한 웹접근성

10_ 4. 모바일 접근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지침 〈필수사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지침 〈권고사항〉

12_ 5. 접근성 관련 법률

접근성 관련 국내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무적용 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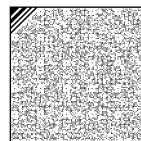
웹의 힘은 그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웹창시자 팀 버너스

『 우리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KWACC)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 및 사용편의성에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웹 개발자와 관리자 등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웹사이트 접근성 및 사용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개소하였습니다. 』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Korea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Center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화 강국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정보화의 양적 성장 아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정보화 사회에서 혜택 받지 못하고 정보취약계층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이러한 정보취약계층에게 나타나는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고, 그들의 정보접근권을 대변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설립하였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터넷 상의 각종 콘텐츠들에 대한 접근 및 사용편의의 보장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는 '웹의 힘은 그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정보화 강국은 장애의 유·무, 성별,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그들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할 때 이루어 질 것입니다.

웹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History

1981~

- 1981. 5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협회 설립 (법인인가)
- 2000. 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 명칭 변경
- 2002. 1 웹접근성연구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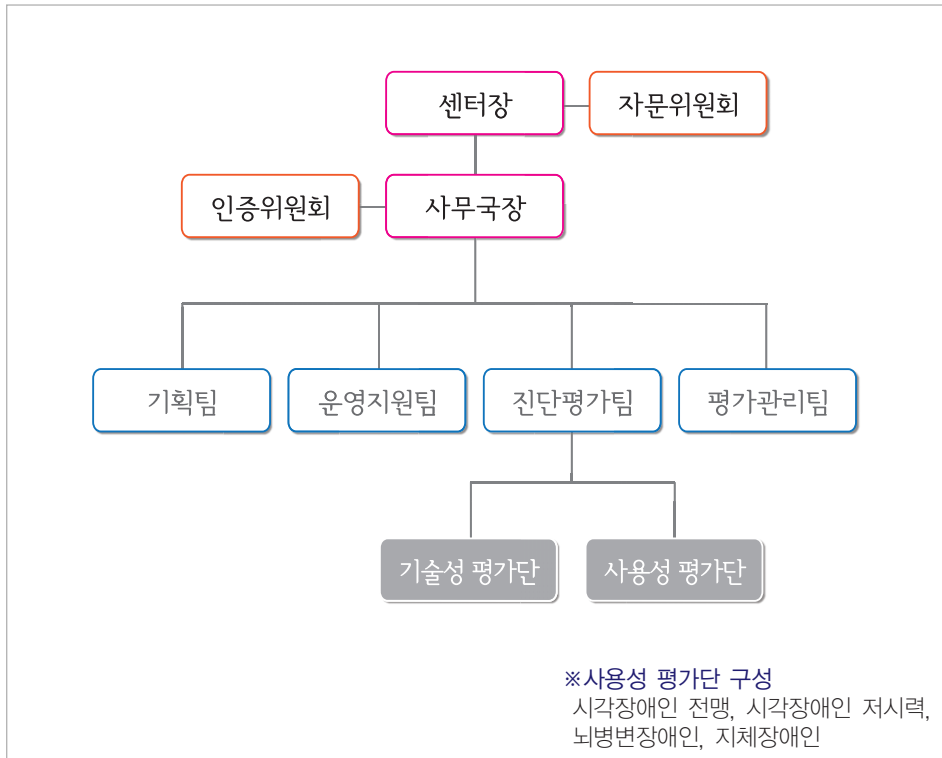


2003~

- ~2003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 1.0 개발 참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現한국정보화진흥원)
- 2003. 11 웹 접근성 인식도 및 준수 실태조사 발표 (100개 사이트)
- 2005. 12 제17대 국회의원 홈페이지 준수 실태조사 발표 (299개 사이트)
- 2006.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웹 사이트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
- 2006. 7 웹 접근성 WA품질마크 평가지침 개발 참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現한국정보화진흥원)
- 2006. 12 함께하는 인터넷 세상 만들기-웹 접근성 평가결과 발표
* 행정자치부



조직도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걸어온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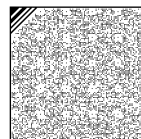
2008~

- 2008. 3 2007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3개 사이트)
- 2008.12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개소
- 2008.12 웹 접근성 향상 세미나 개최
- 2009.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웹 접근성 MOU체결 (現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체결)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9. 3 2008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0개 사이트)

2010~

- 2010. 3 2009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40개 사이트)
- 2010. 4 웹 접근성 사용편의성 향상 세미나 개최
* 신지호 국회의원실공동주최
- 2010. 12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11. 5 장애인 정보접근성 동향 세미나 개최
* 신지호 국회의원실공동주최
- 2011. 5 2010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300개 사이트)
- 2011. 6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웹접근성 평가사업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의 평가사업특징



웹접근성 평가사업

1. WA인증마크 심사

WA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접근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에 부여하는 인증마크입니다.

단순한 지침 준수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편의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사이트에 발급합니다.

※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2. 진단평가

기술성, 사용편의성의 전반적인 접근성 진단평가를 통해 웹 콘텐츠(사이트)의 문제점과 접근성 향상·개선 방향을 제공합니다.

3. 진단패키지

진단평가 1회와 WA인증심사 1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4. 모니터링

웹사이트의 개략적인 웹 접근성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제공합니다.

5. 컨설팅

웹사이트 관리자 및 개발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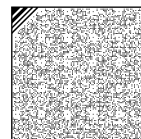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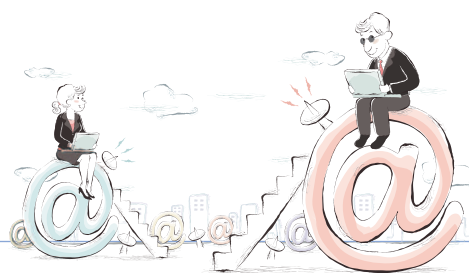
☞ 수수료안내

평가사업	수 수 료			소요기간
	소 형	중 형	대 형	
WA 인증심사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10일
진단평가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15일
진단패키지	200만원	270만원	350만원	15일 + 10일
모니터링	25만원			5일
컨설팅	별도협의			별도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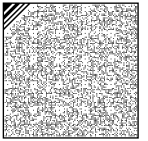
※ 부가세별도

※ 소형 : ~50개 메뉴, 중형 : 51~150개 메뉴, 대형 : 151개~메뉴

주요 실적



년 도	내 용	비 고
2003년	웹 접근성 인식도 및 준수실태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現한국정보화진흥원)
2003년	각국의 정보격차해소 동향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정보격차 해소방안 모색	국회사무처
2005년	제17대 국회의원 홈페이지 준수실태 조사	
2006년	함께하는 인터넷 세상 만들기(웹 접근성 평가)	행정자치부
2007년	웹 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現보건복지부)
2008년	웹 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現보건복지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홈페이지 웹 접근성 실태조사	
2009년	웹표준 및 장애인접근성 강화사업-농림·수산분야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년	웹표준 및 장애인접근성 강화사업-행정·안전분야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년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現보건복지부)
2010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사업	기술표준원
2010년	웹 사이트 사용편의성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現보건복지부)
2010년	2010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년	웹 및 스마트 접근성 평가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정보접근차별해소지원사업	국가인권위원회



WA인증마크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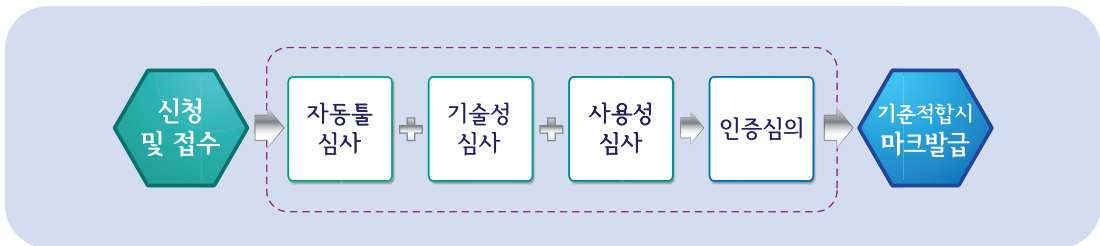
1. 신청방법

이메일(kwacc@kwacc.or.kr) 접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홈페이지(<http://www.kwac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02-973-0073, kwacc@kwacc.or.kr

2. 심사절차



3. 심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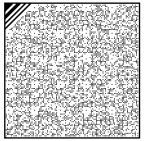
심사구분	평 가 내 용
자동률 심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K-WAH이용 - 대체텍스트, 프레임 타이틀 등 주요항목 확인
기술성 심사	검사항목별 준수를 평가(KWCAG 2.0 기준)
사용성 심사	전문 사용성 평가단에 의한 사용자 과업(Task) 수행
인증심의	기술성과 사용성 심사결과를 검토 후 적합 여부 결정

4. WA 인증 유효기간 : 1년

5. 마크 및 인증서 발급



WA인증마크 주요 발급 사이트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강원교육과학정보원
<http://www.gweduone.net>



EBS 화면해설 · 자막 · 수화
인터넷서비스
<http://free.ebs.c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www.nvrqs.go.kr>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http://www.foodsafety.go.kr>



서울시 도봉구 보건소
<http://health.dobo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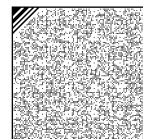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http://www.daedeok.go.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http://www.busanjin.go.kr>

웹 접근성은

Web Accessibility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의 준수 필요성



누구에게나 동등한 정보접근권 제공 필요

웹 접근성 준수는 정보접근에 취약한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나타나는 정보격차를 해소시켜주고, 나아가 누구나 손쉽게 웹을 활용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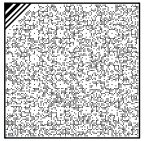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웹 접근성 보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 자막제공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 배경음 사용 금지	- 키보드 사용 보장 - 초점 이동 - 응답시간 조절 - 정지 기능 제공 -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 반복 영역 건너뛰기 - 제목제공 - 적절한 링크 텍스트	- 기본 언어 표시 -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실행 - 콘텐츠의 선형화 - 표의 구성 - 레이블 제공 - 오류 정정	- 마크업 오류 방지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적절한 웹접근성 & 부적절한 웹접근성



적절한 웹 접근성

대체 텍스트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이미지에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지 없이 대체텍스트 정보만으로도 이미지 정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자막, 화면해설 제공	청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서는 모든 음성지원 콘텐츠에 실시간 자막 또는 음성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소리 없이 화면으로만 진행되거나 자막 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텍스트나 음성으로 해당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한 색상대비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자와 배경간의 명도대비와 폰트크기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명도대비 4.5:1이상)
키보드만으로 이용	마우스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불편한 상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마우스가 없는 상태에서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정보 확인 및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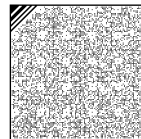


부적절한 웹 접근성

TTS만 제공	TTS(Text to Speech) 제공만으로는 접근성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접근성 준수를 위해서는 웹 접근성 지침에 맞게 콘텐츠(사이트) 자체를 개선하여야 하며, TTS제공은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선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용 별도 웹사이트제공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여 기존 운영사이트와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접근성을 준수하여 하나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웹 접근성 뿐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방법입니다.

모바일 접근성

Mobile Application Accessibilit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필수사항>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정보나 의미를 화면낭독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iOS의 경우 Interface Builder나 UI Accessibility API를 활용하여 label 속성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XML을 활용하거나, Java code등을 활용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초점 제공

초점(Focus)이 적용되어진 선택된 객체만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의미 있는 객체에는 초점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동순서는 순차적이어야 합니다. Accessibility 속성(iOS) 및 focusable 속성(안드로이드)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초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모바일 보조기기 등과의 호환을 위해 모바일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ex) iOS에서 제공하는 UI Accessibility 속성 - Label, Traits, Hint, Frame, Value



누르기 동작 지원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다중누르기, 슬라이드, 끌기와 놓기 등의 복잡한 누르기 동작도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색에 무관한 인식

색각이상자가 색상을 배제하더라도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늬, 패턴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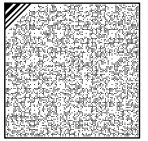
명도 대비

저시력자,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과 배경이 구분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최소 3:1 이상)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막 제공

청각장애인의 정보 이용을 위해 음성제공 콘텐츠에는 동등한 자막이나,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유의미한 음성정보 없이 영상정보만 제공되거나, 화면 내에 자막 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텍스트나 음성으로 해당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권고사항>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컨트롤 간 충분한 간격

사용자 의도와 다른 컨트롤을 누르지 않도록 컨트롤 간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용 폰트 이용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자가 다시 학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관성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경을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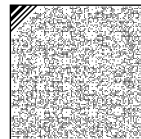
음성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근성 관련 법률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접근성 관련 국내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 (전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차별행위)

- ① (전략)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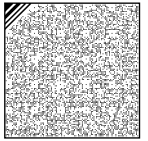
제50조(과태료)

- ① (전략)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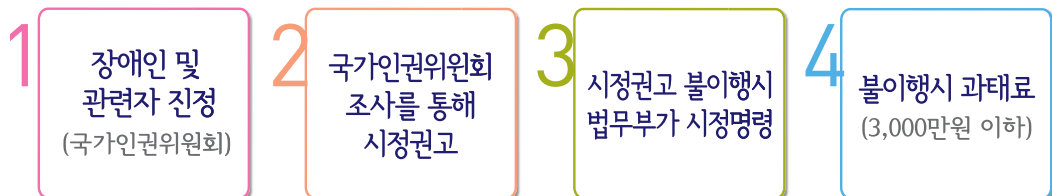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무적용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	법 인
2009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특수학교/ 특수학급있는 국공립학교/ 장애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2010년					국공립문화 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2011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보육시설 (100인 이상)	일반병원/치과/ 한방병원 (입원 30인 이상)			
2012년					민간종합공연장 (1,000석~) 영화관 (300석~)	
2013년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연구기관/ 직업훈련기관/ 보육시설 (100인 이하)	그 외 병원 (입원 30인 이하)		체육관련 행위자	모든 법인
2015년					민간일반공연장/ 소공연장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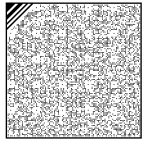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 절차



※ 민·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도 가능합니다.

※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http://www.kwacc.or.kr>)에서 진정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